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4월 13일, 소병훈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2026.9.1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9.15.)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의원)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

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

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 제4항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고 장애인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 간주를 통해 저소득 중 중장애인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음.

다만,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관련한 적용례는 적용 대상 조문을 제10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으로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시행 이후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사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